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
(노후소득미보증형)

01

상품안내

가입안내

- **보험종류**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
-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기간(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보험가입조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가입나이	40세 ~ 75세	납입보험료 한도	30,000달러 이상
보험료 납입기간	일시납	연금지급개시나이	85세

- ※ 피보험자 1인당 최고 5,000,000달러까지 가입가능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적립금의 운용, 노후소득 보증 및 보험금의 지급 등 이 계약과 관련한 통화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의 통화(이하 “미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 됩니다.
- ※ 단, 가입시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을 이용하면 보험료 납입을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환산지급서비스특약을 이용하여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 장애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애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10,000달러 (단, 최초 1회에 한함)

-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에 고도재해장해보장을 위한 준비금을 더하여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됩니다. 단,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저사망적립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하여 드리며,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1%/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단, 5년까지 보증지급)

- ※ 이 상품은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 신청할 당시 해지환급금(단, 고도재해장해보장을 위한 준비금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계약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장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에 대해 노후소득보증형(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과 노후소득미보증형(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에서 말하는 노후소득 보증이란 노후소득인출, 최저연금적립금의 보증(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노후소득 보증비용이란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 없이 노후소득을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은 노후소득 보증이 없는 상품이므로 노후소득 보증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노후소득인출 기능이 없으며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이 없으므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펀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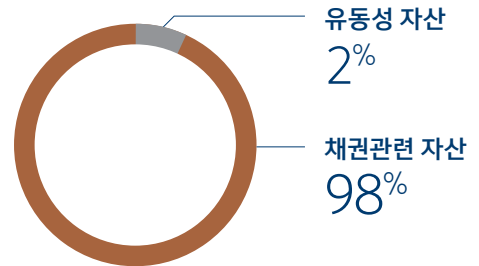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은 계약 체결시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펀드를 100% 선택하셔야 합니다.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463%

운영보수	0.33%	투자일임보수	0.1%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



- ※ 기준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부과 : 특별계정적립금의 "특별계정 운용보수"/365를 매일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 채권관련 자산 :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ETF 등)
유동성 자산 : CD, 기업어음, MMF, 예금 및 기타 유동성 자산

해지공제비용

이 상품은 일시납 상품이므로 해지공제금액이 없습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원화환산납입 서비스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주계약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기본보험료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환산기준일은 계약일의 전일로 합니다. 단, 그 날이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주거래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보험료 납입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납입기준환율: 고객이 보험료 등의 금액을 납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 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예시] 달력: 7월 1일(영업일), 7월 2일(영업일), 7월 3일(공휴일), 7월 4일(영업일)

7월 2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18원,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이 1달러=1,130원 일 때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이의 1달러=1,120원을 납입기준환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결정한 경우

→ 7월 4일에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을 일시납보험료 100,000달러로 가입(계약)하였을 때, 환산기준일인 계약일의 전일(7월 3일)이 공휴일이므로 7월 2일의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000달러 * 1,120원 = 1억,120만원을 주계약의 일시납보험료로 납입

* 단, 납입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이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무효, 철회 또는 취소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가입시 납입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여 원화로 돌려드립니다. 단, 미화로 납입한 보험료는 동일한 금액을 미화로 돌려 드립니다.

[예시] 7월4일(계약일)에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을 일시납 보험료 1억 1,200만원(100,000달러)으로 가입(계약)하고, 7월 29일 철회

가입(계약)시 납입한 원화 1억 1,200만원(원화로 납입시) 또는 100,000달러(미화로 납입시)를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하여 반환

원화환산지급 서비스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 주계약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지급금의 환산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그 날이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주거래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1. 고도재해장해보험금 및 사망시 지급금 : 청구일의 전일
2. 연금액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
3. 인출금 : 『인출신청일+제2영업일』의 전일
4. 해지환급금 : 기준가격 적용일의 전일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지급금 지급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지급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지급기준환율: 회사가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 단, 지급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환매입률)사이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의 판매자격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모집 종사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기준가격 및 순자산가치 확인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 특별계정의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는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 변액보험공시실(www.prudential.co.kr)이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co.kr)상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 > 펀드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5.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 청약철회 청구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 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 청구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보험계약대출 및 감액에 대한 안내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은 보험계약대출 및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10.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11.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푸르덴셜생명 CS Center 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주거래은행

· 현재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주거래은행은 “KEB하나은행”이며, 향후 주거래은행이 변경될 경우 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 보험계약은 달러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노후소득미보증형)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푸르덴셜, **당신의 삶을** 담다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98 푸르덴셜타워
Tel. 02-2144-2000 Fax. 02-2144-2100 CS Center. 1588-3374 수신자부담전화. 080-928-3838
준법감시인확인필-SM-1912001-1-4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3677호 (2019.12.10)
인쇄일자. 2020. 01. 01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
(노후소득미보증형)

01

상품안내

가입안내

- **보험종류**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노후소득미보증형)
- **보험기간**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기간(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 **보험가입조건**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가입나이	15세 ~ 70세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보험료 한도	5년납	500달러 이상	연금지급개시나이	85세
	7년납	400달러 이상		
	10년납	300달러 이상		

- ※ 피보험자 1인당 총납입보험료 기준 최고 5,000,000달러까지 가입가능
- ※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적립금의 운용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이 계약과 관련한 통화는 모두 아메리카합중국 통화(이하 “미화”라 합니다)로 합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해당금액(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단, 가입시 원화환산납입서비스특약이 의무적으로 부가되므로 보험료 납입을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화 환산지급서비스특약을 이용하여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보험금의 종류	지급사유	지급금액(1구좌 기준)
고도재해 장해보험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0달러 (단, 최초 1회에 한함)

-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을 지급하며 계약은 소멸됩니다. 단,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경우에는 최저사망적립금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하여 드리며,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으로 특별계정적립금의 0.07%/12를 매월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형태	지급사유	지급금액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단, 5년까지 보증지급)

- ※ 이 상품은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계약자적립금 인출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인출 신청할 당시 해지환급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1구좌당 5,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 ※ 계약일 이후 10년 이내에는 인출금액이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달러 중 작은 금액 이내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4회에 한하여 인출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노후소득 보증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는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에 대해 노후소득보증형(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과 노후소득미보증형(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노후소득미보증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에서 말하는 노후소득 보증이란 노후소득인출, 최저연금적립금의 보증(단, 연금지급형태를 5년 보증기간부 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 및 노후소득종신연금의 지급(단, 연금지급형태를 노후소득종신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노후소득 보증비용이란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노후소득을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노후소득미보증형)은 노후소득 보증이 없는 상품이므로 노후소득 보증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노후소득인출 기능이 없으며 노후소득종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이 없으므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펀드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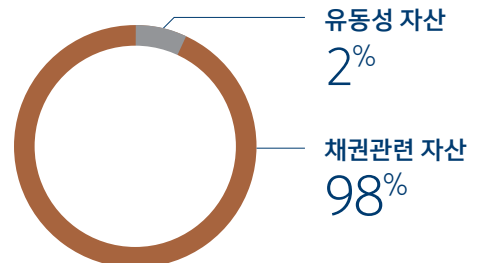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노후소득미보증형)은 계약 체결시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펀드를 100% 선택하셔야 합니다.

미국장기회사채권형

특별계정 운용보수

0.463%

운영보수 0.33% 투자일임보수 0.1%
사무관리보수 0.023% 수탁보수 0.01%



- ※ 기준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특별계정 운용보수의 부과 : 특별계정적립금의 "특별계정 운용보수"/365를 매일 특별계정에서 차감합니다.
- ※ 채권관련 자산 :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관련 집합투자기구(ETF 등)
유동성 자산 : CD, 기업어음, MMF, 예금 및 기타 유동성 자산

01

상품안내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 이상
해지공제금액	967	806	645	483	322	161	-	-
해지공제비율	26.9%	11.2%	6.0%	3.4%	1.8%	0.7%	0	0

- ※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0달러, 월납, 10년납, 85세 연금개시, 미국장기회사채권형 100%, 단위: US달러
- ※ 해지공제금액은 중도해지시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납입 회차에 따라 월단위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 ※ 해지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지공제금액으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지공제금액은 감소하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증가하므로 해지공제비율이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해지공제비용은 주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 위 표의 경과년도 1년에 해당하는 예시는 40세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 경과년도도 동일한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하여야 할 사항

이 보험상품은 달러상품이므로 원-달러 환율변동에 의해 원화 기준으로 환산시 보험료,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원화환산납입 서비스특약II (의무부가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주계약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 가입시 의무적으로 부가됩니다.

주계약의 기본보험료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환산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에서 정한 날이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주거래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하며, 아래에서 정의되지 않은 기타 납입형태는 '납입일-제1영업일'을 환산기준일로 합니다.

납입형태		환산기준일
제2회 이후의 보험료	제1회 보험료	계약일 - 제1영업일
	주계약 기본보험료(자동이체)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
	주계약 기본보험료(자동이체 이외)	납입일 - 제1영업일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보험료 납입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주계약 보험료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 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납입기준환율: 고객이 보험료 등의 금액을 납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예시]

7월 2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18원,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이 1달러=1,130원이고, 7월 4일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이 1달러=1,123원,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이 1달러=1,135원 일 때, 최종으로 고시된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이에서 7월 2일 1달러=1,120원, 7월 4일 1달러=1,125원을 각 해당환산기준일의 납입기준환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회사가 결정한 경우

달력(일자)	7월 1일 (영업일)	7월 2일 (영업일)	7월 3일 (공휴일)	7월 4일 (영업일)	7월 5일 (영업일)
납입기준환율(1달러)	1,130원	1,120원	-	1,125원	1,115원

- 주계약을 7월 4일에 가입(계약),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제1회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계약일 - 제1영업일'이므로 7월 2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달러× 1,120원 = 112,000원을 제1회 보험료로 납입
- 7월 5일에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자동이체),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하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 환산기준일은 '자동이체일 - 제2영업일'이므로 7월 2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달러× 1,120원 = 112,000원을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
- 7월 5일에 제2회 이후의 주계약 보험료 납입(자동이체 이외), 보험료가 100달러인 경우
⇒ 자동이체 이외의 방법을 통해 납입하는 제2회 이후의 주계약 및 특약보험료 환산기준일은 '납입일 - 제1영업일'이므로 7월 4일 납입기준환율에 따라 100달러× 1,125원 = 112,500원을 납입

* 단, 납입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보낼 때의 환율(전신환매도율)사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주계약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계약의 무효, 청약의 철회, 계약의 취소 등에 해당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을 돌려드리는 경우 또는 회사가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납입된 원화와 동일한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단, 미화로 납입한 보험료는 동일한 금액을 미화로 돌려 드립니다.

01

상품안내

원화환산지급 서비스특약 (부가가능특약)

이 특약이 부가된 경우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 주계약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지급금에 사용되는 통화를 원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금을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환산기준일”이라고 하며, 지급금의 환산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그 날이 회사가 거래하는 주된 은행(주거래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주거래은행의 직전 영업일로 합니다.

1. 고도재해장해보험금 및 사망시 지급금 : 청구일의 전일
2. 연금액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
3. 인출금 : 『인출신청일+제2영업일』의 전일
4. 해지환급금 : 기준가격 적용일의 전일

회사는 계약자가 원화로 지급금 지급을 원할 경우 미화로 정해진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금액을 환산기준일의 지급기준환율에 따라 원화로 환산합니다.

지급기준환율: 회사가 보험금, 인출금 및 해지환급금 등의 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환율로서, 주거래은행이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회매입률)보다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당 환산기준일에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회매입률) 범위에서 회사가 정하는 환율을 말합니다.

* 단, 지급기준환율은 해당 환산기준일에 주거래 은행이 최종으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과 송금 받을 때의 환율(전신회매입률)의 사이에서 회사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1.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노후소득미보증형)의 판매자격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노후소득미보증형)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모집 종사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2. 기준가격 및 순자산가치 확인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노후소득미보증형) 특별계정의 기준가격과 순자산가치는 푸르덴셜생명 홈페이지 변액보험공시실(www.prudential.co.kr)이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co.kr)상 “공시실 > 상품비교공시 > 변액보험 > 펀드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대 기본원칙 지키기

· 청약서 자필서명 받기, 약관 전달하기, 계약자보관용 청약서 전달하기를 지키지 않거나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자필서명의 중요성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5. 기존계약 해지 후 신규청약시 주의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신체의 장애상태, 종사하는 직업 및 환경 등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만 보험금 지급이 보장됩니다.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구두로 알리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과거의 병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연령, 직업, 운전, 취미 등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금액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 청약철회 청구

- 생명보험 계약은 장기에 걸친 계약이므로 청약시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본사로 등기우편을 송부하거나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CS Center(1588-3374, 080-928-3838)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 사이버센터에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자보관용 청약서의 청약철회 청구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10. 비과세 혜택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11.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조정

-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푸르덴셜생명 CS Center 나 사이버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2. 주거래은행

- 현재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주거래은행은 “KEB하나은행”이며, 향후 주거래은행이 변경될 경우 푸르덴셜생명보험 홈페이지(www.prudential.co.kr)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 보험은 변액연금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이 보험계약은 달러 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통화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합니다.)

·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노후소득미보증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달러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월납)(노후소득미보증형)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